

의안번호	제 85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10월 1일

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85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10월 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기관별 출연개요

연 번	대상기관	출연목적 및 필요성	출연금액 (단위: 천 원)	관계법령 (출연근거)
1	(재)충북과학 기술혁신원	-안정적 신성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 기능 수행을 위해 석·박사급 우수 R&D 인력 확보 및 운영 인건비 지원 필요 -북부권의 혁신사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「북부권 통합혁신 지원센터」 운영비 지원 -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	79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) ▶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(촉진지구에 대한 지원)
2	(사)충북산학 융합본부	-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 과학사업화(공동연구) 지원을 통한 지역 R&D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-기능지구의 핵심적 과제인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응용 및 개발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특화된 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 사업화 지원	4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(연구개발사업의 지원) ▶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운영비 지원)
3	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	-'19.8월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,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, 창업지원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반영 필요 (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예산 성립에 따른 출연금 반영 필요)	45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1,2항 ▶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2항 ▶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8조 ▶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-47호 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고시 9조」 별표6(지원협약)

3. 주요내용

①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 지원 : 795백만원

- 기관 혁신성장과 신성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 수행능력 증대를 위해 석·박사급 우수 R&D 인력 인건비 지원(495백만원)
- 북부권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산업 지능화·고도화 전략 마련을 통한 신산업 발굴을 위해 「북부권 통합혁신센터」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(200백만원)
- 재단(기관)의 핵심 고유기능 수행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(100백만원)

② (사)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지원 : 400백만원

-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의 공간적 거점인 SB플라자의 운영 안정화 및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활용한 응용·개발 연구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

③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: 450백만원
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비 지원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신성장동력과 신성장동력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김종호	유희남	최원선, 정구호	8413, 8414

기관명	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								
출자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 표: 노근호 ○ 소 재 지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○ 기관규모: 3본부 ○ 주된사업: 지역 과학기술 진흥,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 								
출자출연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: 795백만원(도비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 								
	구 분	사업기간	2021년 예산액	2022년 요구액	재원별				
	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
	석·박사급 R&D 연구 인력 인건비	'22.1.~12.	465	495	495	-	495	-	-
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운영지원	'22.1.~12.	-	200	500	-	200	300	-	
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지원	'22.1.~12.	100	100	100	-	100	-	-	
출자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석·박사급 우수 R&D 인력 확보 및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 기능의 안정적 수행,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○ 북부권 지역의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「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」를 설립·운영하여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○ 기관 핵심 고유기능 수행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혁신 및 미래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 								
근거법령	○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(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)								
지도감독부서인견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기관 명칭 변경, 조직개편 등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기관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 - 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·박사급 우수 R&D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일정기간 필요하며, - 특히, '22년에는 북부권 지역의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「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」를 설립·운영하여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임 ○ 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선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 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. 관계법령 발췌 	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2021년 경영평가 지적사항

- 변화된 기관의 비전·가치체계 등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·공감대 형성 필요
- 내부감사 및 통제시스템 재검토 필요, 인권친화 경영활동 필요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본 기관은 2003년 7월 설립 후, 지역 주도 과학기술 진흥 정책 수립과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가상(VR)·증강(AR) 현실,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및 기능을 확대하고자,
- 2020. 6월 「충북과학기술혁신원」(기존 :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)으로 기관 명칭을 바꾸고 조직개편을 감행하는 등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기관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음
- 북부권 지역의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2년도에는 충청북도 5대 혁신기관 업무를 통합하는 지원센터*를 구축할 계획으로 통합혁신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 소요액 4억원 중 도비 부담액인 2억원에 대한 출연 필요
 - * 충북테크노파크, 충북과학기술혁신원, 충북연구원, 충북기업진흥원,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
- 또한, 운영비를 지원받은 2020년 신규사업 확보실적(656억원)은 전년도 확보 실적(159억원)의 약 4배 정도로, 안정적인 재단운영은 기관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석·박사급 우수 R&D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속적 지원 필요
- 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선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 백만원)

사 업 명	2020년 결산액	2021 예산액(최종) (C)	2022 예산안			
			기관요구액 (A)	실과검토액 (B)	증감 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석·박사급 R&D 인력 인건비	-	465	495	495	-	30
북부권 통합혁신센터 운영지원	-	-	200	200	-	200
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지원	200	100	100	100	-	-

1-2 출연기관 현황

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

설립근거	법률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 ② 중기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조례 ①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	전화번호: 043-210-0800			
				홈페이지: www.cbist.or.kr			
주요연혁	◦'03. 7. :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등기 ◦'04. 1. :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통합 ◦'07.12. :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준공 ◦'18.10. :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개소 ◦'20. 6. :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명칭 변경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충청북도 출연기관			
인원현황 (21.9.30. 기준)	계		정규직	정원 외			
	78명		51명	27명			
임원 (21.9.30.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	
	이사장	성○○	충청북도 경제부지사	당연직			
	상임이사	노○○	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	2020. 1. 5.~2022. 1. 4.			
	비상임이사	김○○	충청북도 신성장산업국장	당연직			
	비상임이사	민○○	前충청북도 행정국장	2021. 7. 26.~2023. 7. 25.			
	비상임이사	김○○	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	2021. 7. 26.~2023. 7. 25.			
	비상임감사	김○○	충청북도 신성장동력과장	당연직			
	비상임감사	이○○	공인회계사무소 대표	2020. 3. 29.~2022. 3. 28.			
주요기능	- 지역 산업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-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가상(VR)·증강(AR) 현실, 블록체인 산업육성 및 활성화 -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획, 조사, 성과분석, 평가 등 정책연구 - 첨단산업 기술 진흥, 산업기술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- 도내 중소·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- 뉴 콘텐츠 및 문화·관광산업 육성						
자본금 (단위: 백만원)	50			출자·출연액 (단위: 백만원)	50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 ※'21.9.30. 기준	연도	2019	2020	2021	재무현황 (단위: 백만원) ※'20.12.31. 기준	자산	17,116
	예산액	17,441	33,760	36,690		부채	4,842
	지자체 지원액 (출연금)	-	200 (도)	565 (도)		자본 (자산-부채)	12,274
경영성과 (단위: 백만원) ※'20.12.31. 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28,926			28,730		196	

1-③-1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석·박사급 R&D 인력 인건비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신성장동력과		출연	495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전문성 제고 필요
- 석·박사급 우수 R&D 인력 확보 및 운영으로 충청북도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수행
- ⇒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력 확보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청북도 석·박사급 R&D 인력 인건비
- 기간 : 2022. 1. ~ 12.
- 출연액 : 495백만원
- 주요내용 : 우수 연구인력 운영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발굴·기획

□ 산출기초

- 박사급 75,000천원 × 4명 = 300,000천원
- 석사급 65,000천원 × 3명 = 195,000천원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합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출자	0	-	-	-	-	-	-	-	-	-
출연금	960	-	-	-	-	-	-	-	465	495

□ 기대효과

-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을 선도하는 R&D전담기관의 역할 수행
-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

□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과기원의 안정적인 재단운영 어려움 발생으로 R&D전담기관의 역할 수행에 한계, 과학기술과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 곤란

1-③-2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운영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신성장동력과		출연	20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북부권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 및 신사업발굴을 위한 지역산업 지능화·고도화 전략을 마련 필요

⇒ 5대 혁신기관* 업무통합 지원센터 및 산학연계 네트워크 구축

* 충북과학기술혁신원, 충북테크노파크, 충북연구원, 충북기업진흥원,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운영지원
- 기간 : 2022. 1. ~ 12.
- 출연액 : 200백만원
- 주요내용 : 통합혁신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

□ 산출기초

- 통합혁신지원센터 운영비, 인건비, 시설조성비 등 일부지원

※ 총소요예산 5억(도비 2억, 시군비 3억), 자세한 사항은 별지첨부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합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출자	0	-	-	-	-	-	-	-	-	-
출연금	200	-	-	-	-	-	-	-	-	200

□ 기대효과

- 신성장동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을 선도하는 북부권 R&D전담 기관의 역할 수행으로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

□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과기원의 재정 여건상 북부권을 포함한 R&D전담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어려움 발생,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 곤란

별 지

북부권 통합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소요예산(안)

1 조직구성

○ 충북과학기술혁신원* 산하조직으로 설치·운영

* 참여기관 인력배치, 센터 주력산업 지원·육성 및 사업발굴 등 운영 총괄지원



○ 기관별 지원인력 규모

기 관 명		인력지원 규모		배 치
합 계 (7개기관)		14명		
충청북도		1명	파견(5급)	경영기획 1
혁 신 기 관	과학기술혁신원	4명	채용	센터장 1, 경영기획 2, 기업지원 1
	TP	2명	파견	경영기획 1, 기업지원 1
	충북연구원	1명	북부분원과 격일근무	경영기획 1
	기업진흥원	1명	파견	기업지원 1
	창조경제혁신센터	1명	파견	산학협력·창업지원 1
	북부권 대학(산학협력단)*	4명	파견	산학협력·창업지원 4

* (충주) 건국대, 한국교통대 (제천) 세명대, 대원대

○ 주요업무

경 영 기 획 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간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○ 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,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○ 신규사업 및 대형 국책사업 기획·발굴, 정부 공모사업 대응 ○ 북부권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○ 북부권 혁신자원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공유·관리 ○ 복무, 예산, 회계, 인사, 홍보 등 조직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
기 업 지 원 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, 판로지원 ○ 중소기업 애로지원 및 정보제공 (금융·경영·인력 등), 지원시책 홍보 ○ 비즈니스 중개 (제품개발·디자인·마케팅·수출 등) ○ 기업 활용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연계 지원 ○ 장비활용 연계·지원 (시생산·인증·신뢰성평가·시험분석 등)
산 학 협 력 창 업 지 원 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부권 산학연 협력증진 협의체 구성·운영 ○ 산학연계 사업 발굴 및 추진 ○ 산학연구사업 관리, 대형국책사업 기획·발굴 추진 ○ 창업(스타트업) 지원사업 홍보, 서비스 제공·연계

2

소요예산[안]

○ 총 소요예산 : 500 백만원 (도비 200, 시군비 300)

항목	금액		내 용
인 건 비	320백만원	매년	· 과학기술혁신원 (75백만원 × 1명) ※ 센터장(부장급) · 과학기술혁신원 (55백만원 × 2명) ※ 책임급 · 과학기술혁신원 (35백만원 × 1명) ※ 주임급 · 기업진흥원 (50백만원 × 1명) ※ 과장급 · 창조경제센터 (50백만원 × 1명) ※ 주임급
일반운영비	76백만원	매년	· 사무관리비(일반수용비, 급량비 등) : 9백만원 · 공공운영비(우편요금 등 공공요금) : 9백만원 · 파견수당(10명) : 48백만원 · 국내여비(14명) : 6.3백만원 · 자산취득비(복합기, 공공청정기 등) : 1.7백만원 · 행사운영비(개소식) : 2백만원
연구개발비	50백만원	매년	· 현황분석, 사업발굴, 기술성 검토 등을 위한 조사, 강연, 연구 등
시 설 비	54백만원	1회	· 컴퓨터, 책상, 의자, 사무기기 등(14명)

※ 충북TP, 충북연구원 인원은 기존인력을 배치조정

1-③-3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 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신성장동력과		출연	10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
-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부가세 환급금 반납 등 충당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 지원
- 기간 : 2022. 1. ~ 12.
- 출연액 : 100백만원
- 주요내용 :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

□ 산출기초

-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부가세 환급금(5회차) 100,000천원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합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출자	0	-	-	-	-	-	-	-	-	-
출연금	400	-	-	-	-	-	-	200	100	100

□ 기대효과

- 안정적인 재단 운영으로 기관 고유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

□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과기원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지역 과학기술진흥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 등 핵심 기능 발휘에 장애 발생

1-④ 관계법령 발취

●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'20.12.31.)

제6조(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) ① 충청북도지사는 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('21.4.20.)

제18조의5(촉진지구에 대한 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·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.

2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신성장동력과 연구개발지원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김중호	이종의	이수희	8442

기관명	(사)충북산학융합본부	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 표 : 노근호 ○ 일반현황 -소재지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-25 -규모 : 1국 2실 5팀 -주된사업 : 오송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, 일학습 병행사업 등 								
출자·출연 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400백만원(도비)	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								
	구 분	사업기간	2021년 예산액	2022년 요구액	재원별				
				계	국비	도비	사군비	기타	
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지원	'22.1.~12.	400	400	400	-	400	-	-	
출자·출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핵심시설인 청주 SB플라자 운영 안정화와 과학사업화 거점역할 수행으로 연구성과 특화 육성 ○ 사업화(R&BD) 가능한 기업 육성 등 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 	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(연구개발사업의 지원)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, 대학 및 기업 간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. 								
지도감독 부서의견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액 국비(228억원)로 건립한 청주SB플라자가 과학벨트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활용한 공공기술 이전 및 제품화, 양산화 지원으로 ○ 지역경제 발전과 4%경제 완성 및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 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. 관계법령 								

2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청주SB플라자는 기초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의 공간적 거점으로, 국비 228억원을 투입하여 2018. 7월 건축공사가 완료됨.(준공식 : '18. 10. 29.)
- 특히, 청주SB플라자는 기능지구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위치하여 운영기관인 충북산학융합본부의 역량과 결합하여 지역 산·학·연이 유기적으로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임.
- 공동연구 시너지 확산을 위해 소통과 협력, 연구와 창의공간이 융합한 청주SB플라자에 창의적이고 잠재역량을 갖춘 지역 내 젊은 기업이 입주하여 미래 충북을 이끌어갈 과학사업화의 전·후방 효과를 낼 핵심거점으로 운영코자 함.
- 도내 기업이 과학벨트 거점지구,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기초연구 성과를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R&BD를 지원하고 공동연구실을 운영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건의 드림.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 백만원)

사 업 명	2020년 결산액	2021 예산액(최종) (C)	2022 예산안			
			기관요구액 (A)	실과검토액 (B)	증감 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지원	400	400	400	400	-	-

2-2 출연기관 현황

(사)충북산학융합본부

설립근거	법률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② 산업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			전화번호 : 043-200-1003			
				홈페이지 : www.osongbaio.or.kr		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’12. 6 : 오송산학융합지구 지정, (사)충북산학융합본부 법인설립 허가 ’14.12 : 오송바이오캠퍼스, 기업연구관 준공 ’17. 6 : 오송산학융합지구 종료(우수지구) ’19. 4 : 충북산학융합본부 제3대원장 선임 (노근호 청주대 산학협력단장) 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컨소시엄 참여기관 (도, 청주시, 충북대, 청주대, 도립대)			
인원현황 (’21.09.17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27명		26명		1명(원장1 비상근)		
임원 (’21.09.17.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이사장	이○○	충청북도지사		2018.07.01.~2022.06.30.		
	비상임이사	한○○	청주시장		2018.07.01.~2022.06.30.		
	비상임이사	김○○	충북대학교 총장		2018.08.23.~2022.08.22.		
	비상임이사	차○○	청주대학교 총장		2019.07.01.~2023.06.30.		
	비상임이사	공○○	충북도립대학교 총장		2017.11.30.~2021.11.29		
	비상임이사	차○○	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		2021.05.03.~2024.05.02.		
	비상임이사	노○○	(사)충북산학융합본부 원장		2019.04.01.~2022.03.31.		
	비상임이사	윤○○	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장		2018.01.02.~2022.01.01		
	비상임이사	김○○	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		2020.09.18.~2022.09.17		
	비상임이사	오○○	대신정기화물자동차(주) 회장		2018.10.29.~2021.10.28.		
	비상임이사	오○○	(주)메타바이오메드 회장		2018.10.29.~2021.10.28.		
	비상임이사	오○○	(주)LG화학 오송공장장		2018.10.29.~2021.10.28.		
	비상임이사	김○○	베스티안재단 이사장		2018.10.29.~2021.10.28.		
비상임이사	윤○○	(주)중현제약 대표이사		2018.10.29.~2021.10.28.	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송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총괄 - 바이오 윈스톱 플랫폼 ‘Biotion’ 운영, 산학융합 R&D 지원사업 -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, 일학습병행사업, 과학사업화 지원사업 -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,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기억혁신사업(RIS) - 기업연구관(1, 2관), 청주SB플라자 운영 및 관리 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5,664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2,732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9	2020	2021	재무현황 (단위:백만원) ’20.12.31.기준	자산	6,412
	예산액	6,898	9,442	11,688		부채	748
	지자체 지원액 (출연금)	2,135 (시1,000 도1,075)	4,392 (시1,013 도3,379)	3,578 (시1,000 도2,578)		자본 (자산-부채)	5,664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’20.12.31.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6,974			6,155		819	

2-③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지원사업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신성장동력과		출연	40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기능지구의 핵심적 과제인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응용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특화된 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 사업화 지원
 ⇒ 기능지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R&D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이끌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지원사업
- 기간 : 2022. 1. ~ 12.
- 출연액 : 400백만원
- 주요내용 : 과학사업화(R&BD) 지원, 연구개발 공동연구실 운영 등

□ 산출기초 ※ 세부사항 별지

- 과학사업화지원(R&BD) : 200백만원
- 연구개발 공동연구실 운영 등 : 110백만원
- 인건비, 운영비, 간접비 : 90백만원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출자	0	-	-	-	-	-	-	-	-	-
출연금	1,600	-	-	-	-	-	400	400	400	400

□ 기대효과

- 청주SB플라자는 과학사업화를 위한 핵심지구로서 공공기술의 응용 및 연구개발기능이 강화되고, 연구활동 및 사업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
- 성공적인 과학 사업화 가능 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, 신기술사업화 등 특화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 인력 배양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과학사업화 초기 동력 부재로 기능지구 R&D성과 사업화기업 유치 어려움 발생 및 지역 혁신성장과 미래 신산업 육성기반 상실 우려

별 지

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지원사업

사업 내용	예산비목	금 액 (단위:천원)	산 출 기 초	비고	
총 계		400,000			
지원금(소계)		360,000			
직 접 비	과학 사업화	과학사업화 및 기업성장	200,000	· 과제 4건 × 50,000천원 = 200,000천원 - 기술이전비용 포함 사업화 지원금	
	연구 환경 조성	공동장비 유지보수	50,000	· 기자재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교체(IQ, OQ포함) - 50,000천원	
		공동장비활용 교육운영	60,000	· 전문가 활용비 및 강사료 - 74일(592H) × 500천원 = 37,000천원 · 실습재료비 - 20,000천원 · 장비실 홍보비(브로슈어 제작 및 온라인 홍보 등) - 3,000천원	
	인건비	인건비	36,000	· 3,000천원 × 12개월 = 36,000천원	
		업무추진비	1,250	· 업무추진비 1식	
		여비	1,600	· 40천원 × 40회 = 1,600천원	
	사업 운영비	전문가 활용비	7,650	· 2회 × 5명 × 350천원 = 3,500천원 - 선정평가, 결과평가 · 1회 × 5명 × 350천원 = 1,750천원 - 추가모집 선정평가, 이의제기 심의 등 · 1회 × 12명 × 200천원 = 2,400천원 - 지원사업 및 기술이전 관련 자문 등	
		사무관리비	3,500	· 일반수용비(사무용품, 인쇄비 등) = 1,000천원 · 회계정산비(기업 4건, 내부 1건) = 2,500천원 - 500천원 × 5건 = 2,500천원	
	간접비		40,000	· 법인 운영 간접비(전체예산 대비 10%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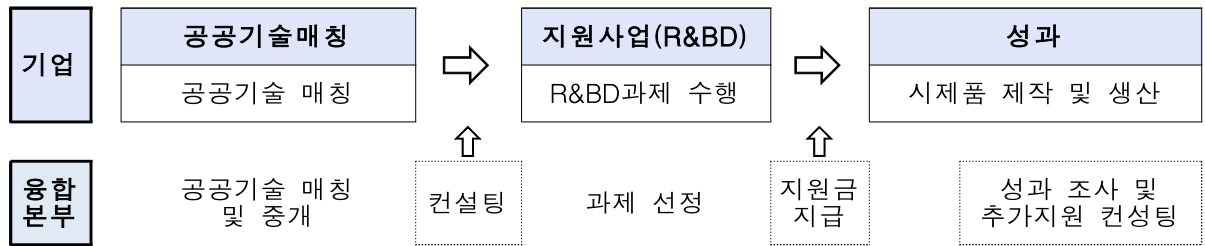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4조(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)

①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.

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-3호)

□ 과학사업화지원

- (대 상) 공공기술을 이전하여 사업화 가능 기업(3개기업)
- (사 업 비) 200백만원
- (지원규모) 과제당 평균 50백만원 이내
- (추진체계)



□ 연구환경조성

- 청주SB플라자 공간에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협업 연구공간 운영 및 지원(공동연구실 및 장비활용 교육운영)

2-4 관계법령 발취

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19-04-30)

제34조(연구개발사업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·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(18-04-06)

제7조(운영비 지원) ① 플라자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, 수탁자부담금,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도지사는 플라자의 원활한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3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신성장동력과 연구개발지원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김종호	이종의	이희섭	8443

기 관 명	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 표 : 강병삼 ○ 일반현황 - 소 재 지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(도룡동 4-27) - 규 모 : 11본부, 직원수 173명 - 주된사업 : 연구개발특구 육성, 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							
출자·출연 사 업 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450백만원(도비)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							
	구 분	사업기간	2021년 예산액	2022년 요구액	재원별			
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
충북청주 개발특구	강소연구 육성사업	'22.2.~12.	400	450	2,900	2,000	450	450
※ 국비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직접지원								
출자·출연 필 요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'19.8월)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육성사업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반드시 지원필요 * 강소특구 지정·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(국비 대비 지방비 20%이상 매칭) ○ 기존 특구에서도 매년 육성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출연 필요 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 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							
지도감독 부서인권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'19.8월)에 따라,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으로 특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, ○ 지역경제 발전과 4%경제 및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드릴 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등 기타자료 							

3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우리 도는 지역 R&D 강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충북연구개발특구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옴
-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여 8월에 충북을 포함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·고시됨
 - * '20년 6개 강소특구 추가 지정으로 총 12개 강소특구 지정
-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는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기술사업화 배후공간으로 총 2.2km²의 면적으로 구성되며, 스마트IT 부품·시스템 분야를 특화하여 육성중임
-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 주도형으로 새롭게 도입된 소규모 고밀도 R&D특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강소특구 육성사업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,
- 국비지원액 대비 20%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
 - *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-47호 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」 별표6에 의한 협약
- 기존 5개의 연구개발특구(대덕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)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구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출연(30~45억원)해 왔으며, '20년~'21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위해 특구별 국비지원에 대해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추진하였음
-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출연금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

2 출연금 검토

(단위: 백만원)

사 업 명	2020년 결산액	2021 예산액(최종) (C)	2022 예산안			
			기관요구액 (A)	실과검토액 (B)	증감 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충북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	600	400	450	450	-	50

※ 21년 대비 증액 사유: 지방비 매칭비율 변경(국비대비20%→총사업비대비30% 이상)에 따른 증액
 관련근거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-2281호(2021.8.26.)

3-② 출연기관 현황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설립근거	법률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			전화번호 : 042-865-8800			
				홈페이지 : www.innopolis.or.kr			
주요연혁	◦ '05. 9. :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◦ '12. 7. : 특구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범(명칭변경) ◦ '18. 2. : 준정부기관 지정 ◦ '19. 8. : 강소특구(안산,진주,창원,포항,청주,김해) 지정 ◦ '20. 8. : 강소특구(구미,울산,군산,나주,홍릉,천안) 지정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정부출연기관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	
인원현황 ('21.09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173명		173명		0명		
임원 ('21.09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의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이사장	강○○	(前)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장		2021.03.05.~2024.03.04.		
	이사 (당연직)	권○○	(現)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일자리혁신관		2020.05.11.~		
		임○○	(現)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		2021.05.22.~		
	이사 (선임직)	남○○	(現)계명대학교 산학부총장		2020.07.03.~2022.07.02.		
		이○○	(現)(재)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		2020.07.03.~2022.07.02.		
		김○○	(現)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		2021.04.14.~2023.04.13.		
		김○○	(現)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		2020.07.03.~2022.07.02.		
이○○		(現)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산업 혁신본부장		2021.04.14.~2023.04.13.			
이○○	(現)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		2021.07.08.~2023.07.07.				
주요기능	◦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(특구법 제46조) - 특구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및 창업의 효율적 지원 -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·협력 - 국내·외 투자 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 - 특구개발과 관련된 토지, 건물, 시설, 기자재의 취득, 공급 및 임대						
자본금 (단위: 백만원)		41,263 ('20.12월 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 백만원)		155,703(출연) ('20.12월 말 기준)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21	2020	2019	재무현황 (백만원) '20.12.31.기준	자산	71,741
	예산액	221,227	179,003	140,420		부채	17,650
	지자체 지원액 (출연금)	26,601	18,770	8,986		자본 (자산-부채)	54,091
경영성과 (단위: 백만원) '20.12.31.기준	총수익				총비용		당기순이익
	160,758				161,267		(509)

3-③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신성장동력과 연구개발지원팀		출연	45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 필요
- 지역 혁신 거점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
- 기간 : 2022. 2. ~ 12.
- 출연액 : 450백만원(국비 2,000, 도비 450, 청주시 450)

(단위:백만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21년 (A)	2022년 (B)	증감 (C=B-A)	비고
계	4,800	2,900	△1,900	지방비 매칭비율 변경 (국비대비20%→ 총사업비대비30% 이상)
국비	4,000	2,000	△2,000	
도비	400	450	50	
시군비	400	450	50	

- 주요내용 : R&D 기술사업화 지원,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등 특구 육성

□ 산출기초

- 강소형 기술 발굴·기획, 기술이전사업화, 기업성장지원 사업 등 추진
- ※ 도비 출연금은 지역 특화사업에 활용

□ 기대효과

-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R&D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
- R&D-사업화-재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

□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동력 부재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및 협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구 해지 등 불이익 발생 우려

붙임1 2022년 충북청주강소연구특구 사업 추진계획

1 기술발굴 및 연계

□ 목 적

- 우수 공공기술 발굴 및 마케팅, 외부 수요 발굴 및 매칭, 유관 기관 네트워킹 활동 등을 통한 기술 이전·사업화 활성화

□ 추진방향

- 충북대학교, 주변 혁신기관, 강소특구 육성 협의체 통한 수요 기반 기술발굴 및 전/후방 산업 연계 통한 수요확보 기반 기술이전 성과 창출

□ 사업내용

- ① (양방향 기술발굴 연계) 충청권 기술사업화 거점 플랫폼 운영을 통한 공급 기반 기술발굴 및 최종 제품 전/후방산업 연계 수요 기반 기술발굴
- ② (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)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 촉진수단인 연구소기업의 용도별 기술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소기업의 설립·육성 지원

2 기술이전 사업화

□ 목적

-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스마트 IT 부품·시스템 분야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과 창출

□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

□ 주요내용

-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연구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R&BD(제품화·양산화) 과제 지원
- 기술적 타당성 검증, 시험·분석·평가, 기술패키징, 시제품 개발, 국내외 표준·인증, 양산기술 개발,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
- 스마트 IT 부품·시스템 분야와 연관된 기술사업화 과제 50%이상 지원 원칙

□ 지원대상

- 공공연구기관·대학의 기술을 이전·출자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기업·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등

□ 추진방식

- 강소특구별로 지원대상 발굴 →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특구재단)이 통합 공고, 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지원대상 선정

3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

□ 목 적

-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창업 촉진과 유관 기관 연계 투자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 활성화

□ 추진방향

- 창업기술 실증 지원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
- 청주 강소특구 내 창업 활성화 및 초기창업 투자 활성화

□ 사업내용

- ① (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) 대학 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자 후보군 발굴, 창업아이템 검증, 창업 후 후속지원 연계 하여 창업 활성화
- ② (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)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 하여 초기투자·멘토링·데모데이 등의 후속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추진

4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

□ 목 적

- 혁신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술 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
- 스마트 IT 부품/시스템 분야 R&BD 환경 고도화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

□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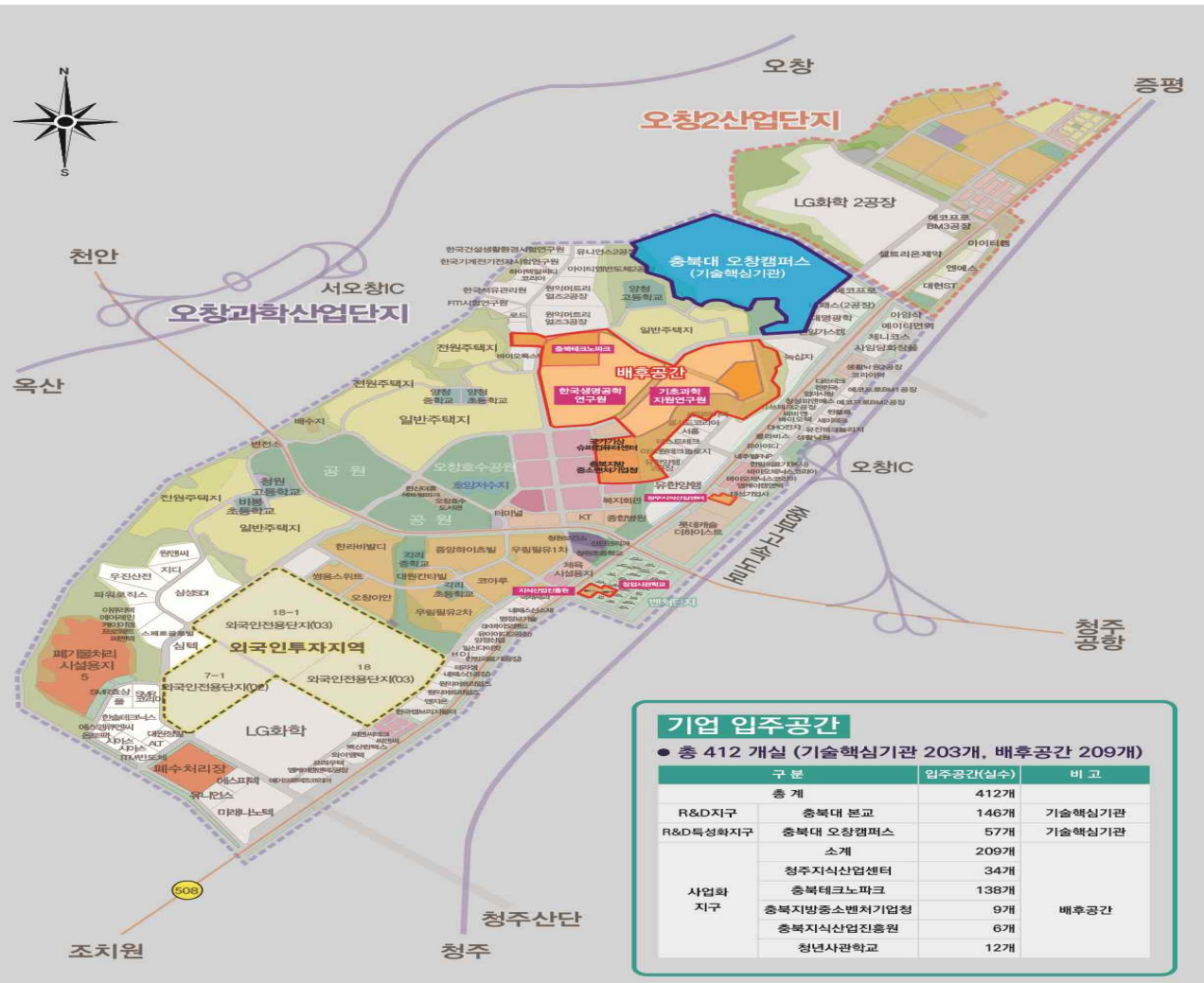
-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'글로벌 강소기업' 육성
- 특화기업 성장지원, 해외진출 지원, 미래기술 융합 제품혁신 등 다양한 특화 활동 전개

□ 사업내용

- ① (혁신네트워크 육성) 충북청주강소특구 육성 협의체 및 스마트 IT 특화 혁신 네트워크 운영으로 연계·협력 성과 창출
- ② (지역 특화기업 성장패키지 지원) 강소특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질적 성장기반 마련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거래처 발굴 활동 지원 등 판로개척
- ③ (미래기술 융합 제품혁신 지원) 미래기술 융합 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제품 혁신을 지원하여 기술 업그레이드, 스케일업, 성능 및 품질 개선, 신제품 개발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 대·중견기업과 주기적인 기술제품 교류 네트워크 지원
- ④ (특화기업 해외진출 지원) 글로벌 주요 시장 진출을 타겟으로 해외 수요가 발굴되면, 해외 비즈니스 매칭 등 해외진출 지원 및 강소특구 특화분야 중심의 해외전문전시회를 신규 발굴, 특구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및 해외 기술사업화 관련 계약 프로세스 솔루션 지원

붙임2

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위치도 및 배후공간



강소특구 지정·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서

- 협 약 명 :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·육성 협력
- 협약기간 : 지정 고시일 ~ 지정해제 고시일
- 협약당사자

(가) 충청북도지사 이 시 중

(나) 청주시장 한 범 덕

(다) 충북대학교 총장 김 수 갑

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강소특구를 지정하고, 육성·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(가)와 (나)와 (다)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협약의 목적) 본 협약은 강소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,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의 내용) ① 본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별첨의 “충북강소특구 지정 요청서”로 한다.

② 제1항의 내용이 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」 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될 경우 그에 따른다.

제3조(신의성실) ① (가)와 (나)와 (다)는 충북강소특구의 지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협약 및 관련 법령(규정)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(가)와 (나)와 (다)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협약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참여인력, 현장 확인, 관계서류 열람, 통계자료 조사, 평가 이행 등의 정보 수집·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·협력하여야 한다.



제4조(책임과 역할) ① (가)와 (나)와 (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
1. 강소특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·운영
2. 공공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
3. 혁신생태계 구축 및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분담
 - 가. 연구개발특구육성(R&D)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 20% 이상
 - 나. 특구 기술금융 조성·운영 동참
 - 다. 연구개발특구육성(비R&D)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 50% 이상

② (가)와 (나)와 (다)는 강소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세제혜택(취득세, 재산세 등 지방세 지원)
2. 강소특구 활성화와 연관되고 시행의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한 규제 개선(입지, 토지, 인력, 기술, 실증화, 사업화 등)
3. 산·학·연·관 협력 활동의 활성화 보조
(기술사업화 상담 인력·조직 지원 및 공유 등)
4. 신규 인프라 구축 등의 기반 및 관리 협조
(국·공유 재산 사용·수익·대부·매각, 부지매입비 지원 등)
5. 강소특구의 개발 및 관리 관련 사항
(인·허가 의제처리, 사업시행자 유치 등)
6. 강소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

③ (가)와 (나)와 (다)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.

④ (가)와 (나)와 (다)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“충북강소특구 지정 요청서”의 강소특구 지정계획 및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약의 변경) (가)와 (나)와 (다)는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의 해약) (가)와 (나)와 (다)는 강소특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일방이 중대한 협약 위반을 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 다만,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7조(권리·의무의 양도금지) (가)와 (나)와 (다)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, 위임, 하도급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기타) ① (가)와 (나)와 (다)는 본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의 내용과 이에 관한 사업비의 지급, 관리 및 사용, 사용실적 보고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① (가)와 (나)와 (다)는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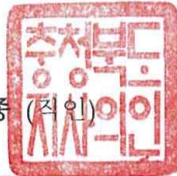
③ 본 협약서는 (가)와 (나)와 (다)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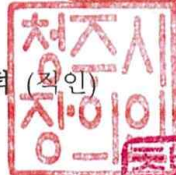
2018년 7월 7일



(가)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(직인)



(나) 청주시장 한 범 덕 (직인)



(다) 충북대학교 총장 김 수 갑 (직인)



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(약칭: 연구개발특구법)

[시행 2019. 4. 1.] [법률 제16172호, 2018. 12. 31., 타법개정]

제12조(특구육성사업의 추진)

-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(이하 "특구육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하고,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·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,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,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(자금의 조달)

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

1.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
3. 차입금(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4. 수익사업의 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

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*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***제48조(사업)**

1. 특구의 개발 및 관리·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
2.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3.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
4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
5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

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-47호

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」를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8. 7. 24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<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>

제2장 강소특구 지정원칙

제9조(협약) ① 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약 목적 및 기간
2. 협약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
- 3. 협약 당사자의 자원분담 계획 및 목표**
4. 협약 사항에 따른 성실 수행 의무
5.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정·육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당사자인 시·도지사 및 기술 핵심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약서 양식은 별표 6과 같으며, 협약서에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, 양식에서 이미 명시된 사항을 제외할 수는 없다. 다만, 협약서 양식에 명시된 사항의 규모, 수준 등을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. <별표6> 강소특구 지정·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서